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25
----------	------

제출일자 : 2025. 10. 12.

제출자 : 달성군청



1. 제안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달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조 및 제21조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25. 8. 11. ~ 8. 31.)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법 제21조 및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의 위원은 법 제21조 및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군 지역 업무 담당자, 그 밖에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군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통합지원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자문단)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조정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면·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가.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비
- 나. 지역돌봄서비스 확충비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비 : 10,000천원
 -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 : 90천원×8명×12월=8,640천원
 - ※ 통합지원협의체 참석수당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하여 해당 없음
 - 홍보비(리플릿) : 0.2천원×6,800매=1,360천원
- 통합돌봄 서포터즈 운영 : 6,000천원
 - 교재비 : 5천원×400부=2,000천원
 - 홍보물품 : 10천원×200개=2,000천원
 - 피복비 : 20천원
- 어르신 영양도시락 지원 : 37,800천원
 - 14천원×9회×12개월×25명=37,800천원

나. 추계 결과 : 53,800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시행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 및 사업비 운영 비용은 연 53,8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 7,500천원(국비 5,000천원, 시비 2,500천원)
- 자체예산 : 46,3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팀장 이효은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269,000	
지방세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231,500	
의존재원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세 출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269,000	
운영비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사업비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89,000	
재원 조달	53,800	53,800	53,800	53,800	53,800	269,000	
의존 재원	소 계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보조금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231,500
	지방세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231,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균 비	46,300	46,300	46,300	46,300	46,300	231,5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